

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



제2316호

2026. 4. 16.(목)



노원구 전경

-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원구청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윤경
전화 : 02-2116-3414

차 례

조 례

- 제208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제208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8
- 제208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11
- 제208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 15
- 제208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제208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제208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 제208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 제208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1

고 시

- 제2026-3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83

공 고

- 제2026-696호 공인 등록 공고 84

조 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8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주택용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위해 소방시설”로,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소방시설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시설 지원범위)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5조 중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주택용 소방시설”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u>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 ----- ----- ----- ----- -- <u>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그 밖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u>----- -----.</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주택용 소방시설</u>”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p> | <p><삭 제></p> |
|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u>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p> | <p>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u>위해 소방시설</u>----- ----- ----- <u>추진해야</u> -----.</p> |
| <p>제4조(<u>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u>)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u>주택용 소방시설 설치</u>를 지원할 수 있다.</p> | <p>제4조(<u>소방시설 지원대상</u>) ----- ----- ----- <u>소방시설</u> ----- -----.</p> |

1. ~ 10. (생략)

<신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

1. ~ 10.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소방시설 지원범위)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1. 소화기
- 2. 단독경보형 감지기
-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5조(지원 신청) -----
소방시설 -----

----- 제출해야
-----.

제6조(지원 결정) -----
----- 소방시
설-----

----- 소방시설 -----

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8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

업

제7조(협력체계 마련)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학계·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8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5조(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추진) 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8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노원구의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종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용기·포장재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팩 : 펄프와 합성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유팩 등 냉장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멸균팩 : 펄프, 합성수지 및 알루미늄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유·주스 등 상온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를 포함한 다른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

게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행군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정된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 전용수거함에 배출

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 일반 종이류와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
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방안
2. 일반 종이류, 일반팩과 멸균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3.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운영 점진적 확대
4.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홍보
5.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제6조(자원순환 촉진 사업) 구청장은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 공동주택·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
3. 공공청사, 교육·의료·복지시설(단체급식시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구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 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
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거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노원구 산하 공공기관에 종이팩 전

용 수거함(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자동수거기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종이팩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수거업체, 선별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팩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이 생활 속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8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기물
파손 등”을 “악성민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
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

나. 공무원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협박·위력 행사 등으로 신체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나. 폭언·모욕, 반복적·부당한 요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비방·협박·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

라.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집기 또는 물품을 파손·훼손하는 등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제3조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기물 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4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이”를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악성민원”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을”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을”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업무공무원”을 “민원업무공무원 등”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악성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치유에 필요한”을 “회복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6.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

제9조 중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신청하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원실 내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제13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무원 근로자

나. 공무원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 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
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협박·위력 행사
등으로 신체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나. 폭언·모욕, 반복적·부
당한 요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사
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
용하여 비방·협박·명예
훼손 등을 하는 행위

라.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이
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
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
거나 유사한 민원을 반복
적으로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집기 또는 물품을 파손·

· 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공무원 등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생략)

<신설>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

제6조(실태조사) ----- 민원담당공무원 등-----

-----.

제7조(지원 사항) ----- 민원업무공무원 등-----
----- 악성민원-----

-----.

- 1. ~ 3. (현행과 같음)
- 4. --- 회복을 위한 -----
--

5. (현행과 같음)

6.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

7. -----
-- 민원담당공무원 등----

제9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휴식시간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소속 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생략)

제11조(안전시설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신설>

제9조(지원 신청) -----
----- 신청하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
----- 제출해야 -----.

제10조(지원 결정) ① -----
----- 결정해야 -----.
----- 민원담당공무원 등-----

② -----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전시설 등) ----- 민원담당공무원 등-----
----- 마련해야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민원실 내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생략)

제13조(홍보방안) 구청장은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3조(홍보방안) -----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

마련해야 -----.

<삭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8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하는데”를 “설치·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체육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
금을”을 “받거나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자는”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
은 조 제8호 중 ““강습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강습프로그램을 말하
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프로
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료, 사용료, 대관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청사”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을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단,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설치한”을 “설치할”로, “완료한”을 “완료할”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별표 3”을 각각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산하여야”를 “정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 등에 따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한해”를 “한정하여”로 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 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8조제1항 중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프로그램 사용료”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을 “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사용료의 반환은”을 “제6조제5항에 따른 도시

공원내의 사용료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변상하여야”를 “변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거하여야”를 “수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위탁받고자 하는”을 “위탁받으려는”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탁하는데”를 “위탁하는 데”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구성·운영하여야”를 “구성·운영해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제6조 관련)

1. 프로그램 사용료

(단위 : 원)

| 구분 | 사용료 대상 | 기본 사용료 | 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 | | | | |
|-----------------|-----------|-----------------|--------------------|-------------------|-------------------|-------------------|--------------------|--------------------|
| | |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 수영장 (1일1회) | 성인 | 3,900~ 4,800 | 16,000~ 21,200 | 31,700~ 42,100 | 47,000~ 62,500 | 62,900~ 83,600 | 78,500~ 104,400 | 92,800~ 123,500 |
| | 청소년 | 2,700~ 3,300 | 11,000~ 15,800 | 21,800~ 31,400 | 32,200~ 46,500 | 43,200~ 62,400 | 53,900~ 77,900 | 64,500~ 93,100 |
| | 어린이 | 1,900~ 2,400 | 8,000~ 12,900 | 15,900~ 25,700 | 23,500~ 38,000 | 31,400~ 50,800 | 39,200~ 63,400 | 46,900~ 75,800 |
| 체육관 등 (1일1회) | 성인 | 2,300~ 3,300 | 9,900~ 13,000 | 20,000~ 26,400 | 30,000~ 39,600 | 39,900~ 52,600 | 44,700~ 59,000 | 47,000~ 62,000 |
| | 청소년 | 1,700~ 3,000 | 7,500~ 9,100 | 15,000~ 18,200 | 22,400~ 27,200 | 29,600~ 36,000 | 33,000~ 40,100 | 37,000~ 45,000 |
| | 어린이 | 1,500~ 2,000 | 6,200~ 7,900 | 12,700~ 16,200 | 19,000~ 24,300 | 25,100~ 32,100 | 28,000~ 35,800 | 31,300~ 40,000 |
| 탁구장 (단식1시간) | 성인 | 1,900~ 2,500 | 7,700~ 10,000 | 15,100~ 19,600 | 23,100~ 30,100 | 30,600~ 39,700 | 34,300~ 44,600 | 38,600~ 50,100 |
| | 청소년 및 어린이 | 1,400~ 1,900 | 5,800~ 7,500 | 11,700~ 15,200 | 17,400~ 22,600 | 23,100~ 30,000 | 25,900~ 33,600 | 29,100~ 37,800 |

비고

1.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체육관 등의 사용료는 수영장, 탁구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3. 사용료 가산
 - 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30퍼센트
 - 나.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4. 사용료 감면
 - 가. 10퍼센트 감면
 - (1)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사용료에 한정함)
 - 나. 20퍼센트 감면
 - (1) 경로우대자
 - (2)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3) 병역명문가
 - 다. 30퍼센트 감면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비
고

라. 50퍼센트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마.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을 시 적용하며,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단, 3개월 이상 계속이용회원은 최초 회원등록 시 1회 증빙서류 제출로 같음하며, 감면자격의 변동이 있는 이용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원봉사자 등)은 최초 제출 후 1년 단위로 재제출

5.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료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6. 시설 사용료 중 강습이 포함되는 프로그램은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7. 상기 조항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한정하며, 특수 목적 및 대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소그룹 프로그램 등)은 적용하지 않음

2. 대관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체육행사 시 (기본 2시간) | 체육행사 이외 행사 시 (기본 2시간) |
|---------|--------------------|--------------------------|
| 대 체 육 관 | 77,000~154,000 | 99,000~198,000 |
| 소 체 육 관 | 55,000~110,000 | 77,000~154,000 |
| 수 영 장 | 220,000~440,000 | 264,000~528,000 |
| 강 의 실 | . | 22,000~44,000 |

비고

1.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야간사용료는 평일의 30퍼센트 가산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야간사용료는 별도 가산하지 않음)
3. 초과이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수영장의 동절기(11월~다음 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5. 대체육관, 소체육관의 체육경기와 강의실 사용료는 최소 2시간 단위로 사용
6. 부대시설 사용료는 체육관 사용자 50명 초과 시 1인당 2,000원 부과
(단, 최고 금액은 대관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
7. 사용료 감면
 - 가. 20퍼센트 감면
 - (1)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2) 병역명문가
 - 나. 30퍼센트 감면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 다. 50퍼센트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 (13) 어린이 또는 청소년(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
 - (14) 경로우대자(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경로우대자)
- 라.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을 시 적용하며,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단, 3개월 이상 계속이용회원은 최초 회원등록 시 1회 증빙서류 제출로 같음하며, 감면 자격의 변동이 있는 이용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원봉사자 등)은 최초 제출 후 1년 단위로 재제출

[별표 2]

다목적체육시설 사용료 (제6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종 류 별 | 기준시간 | 사 용 료 |
|---------------|---|-------|-----------------|
| 공릉동 다목적구장 | 풋살(축구), 농구 등 | 1시간 | 22,000~33,000 |
| 육사 체육시설 | 육사축구장 | 2시간 | 60,500~90,750 |
| | 육사야구장 | 2시간 | 114,400~171,600 |
| | 육사체육관(탁구장) | 3시간/명 | 4,500~6,750 |
| 수락산 스포츠타운 | 축구장 | 2시간 | 55,000~82,500 |
| | 야구장 | 2시간 | 80,000~120,000 |
| | 테니스장 | 1시간 | 4,000~8,000 |
| 체육경기 이외 행사 | 문화행사, 전시회, 강습 등 | 1시간 | 33,000~49,500 |
| 비 고 | 1.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사용료 감면 가. 20퍼센트 감면 (1)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2) 병역명문가 나. 30퍼센트 감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다. 50퍼센트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비고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 (13) 어린이 또는 청소년(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
 - (14) 경로우대자(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경로우대자)는 평일 오전 시간대(07:00-12:00) 75퍼센트, 이 외 시간대 50퍼센트 감면
3.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4.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5. 다목적체육시설 사용료는 위 사용료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별표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제6조 관련)

| 구 분 | 종 류 별 | 기준시간 | 사 용 료 |
|-----------------|--|------|---------|
| 구 청사 내 체력단련장 | 헬스 | 월 단위 | 20,000원 |
| | 물품대여 등 | 월 단위 | 5,000원 |
| 비 고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세 10퍼센트 별도 부과 2. 체력단련장 사용은 운동시설 전체에 대해 월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시간은 09:00~18:00 이내로 함 3. 사용료 감면 가. 20퍼센트 감면 (1)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2) 경로우대자 (3) 병역명문가 나. 30퍼센트 감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다. 50퍼센트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시설 사용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
| | | | |

| | |
|--|---|
| | <p>(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1)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p> <p>(12) 어린이 또는 청소년</p> <p>(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p> <p>4.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관</p> <p>5. 사용료는 구 주민이 이용할 경우의 기준임 (노원구청 소속 직원은 제외)</p> |
|--|---|

[별표 4]

부속시설사용료 (제6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종 류 별 | 기준시간 | 부속시설사용료 |
|------|-------------------------------|------|---------------|
| 축구장 | 조명탑 | 1시간 | 11,000~22,000 |
| 야구장 | 조명탑 | 1시간 | 11,000~22,000 |
| 테니스장 | 조명탑 | 1시간 | 3,000~6,000 |
| 풋살장 | 조명탑 | 1시간 | 6,000~12,000 |
| 족구장 | 조명탑 | 1시간 | 3,000~6,000 |
| 비 고 | 1. 그 밖의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을 <u>설치·운영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 -- <u>설치·운영하는 데</u> ----- ----- ----- -----.</p> |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
| <p>1. (생 략)</p> | <p>1. (현행과 같음)</p> |
| <p>2.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u>체육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u>을 말한다.</p> | <p>2. ----- ----- <u>받거나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u> <u>하는 자</u>를 ----- -----.</p> |
| <p>3.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u>자</u>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u>자</u>는 “경로우대자”라 한다.</p> | <p>3. ----- <u>사람</u> <u>을</u> ----- <u>사</u> <u>람을</u> -----.</p> |
| <p>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u>자</u>를 말한다.</p> | <p>4. ----- ----- <u>사람을</u> -----.</p> |
| <p>5.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u>자</u>를 말한다.</p> | <p>5. ----- <u>사람</u> <u>을</u> --.</p> |

6.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 제>

7. “개인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연습사용료”란 개인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 제>

8.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 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프로그램” -----
----- 프로
그램-----

--.

<신 설>

9.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료, 사용료, 대관료 등을 말한다.

9. 10. (생략)

10.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

-----.

- 1. (생략)
- 2. 구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의 체육시설

- 3. (생략)
- ② (생략)

제4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 ③ (생략)
-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1.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

<신 설>

제5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 (생략)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

정될 때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을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단,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

제5조(사용시간 등) ① -----
-- 사용시간-----
-----.

1. 2.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설치할 -----
----- 완료할 -----

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
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
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
요금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
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범위에서 사용료
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
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정하
고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전액을 사
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
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
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
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
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 ⑥ (생략)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

-----.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

----- 대하여는 -----

-- 별표 4-----

----- 별표 4-----

② -----

----- 정산해야 -----.

③ -----

----- 「서울

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

품 관리 조례」-----.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

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 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별 세부 감면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정한다. 단,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 등에 따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나. ~ 카. (생략)

<신설>

2. ~ 7. (생략)

8.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 사용료에 한해 10퍼센트 감면

9. (생략)

④ (생략)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중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연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 5. (생략)

6.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또는 「소

나. ~ 카. (현행과 같음)

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 7. (현행과 같음)

8. -----

----- 한정하여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
-- 프로그램 사용료-----

----- 않는다.-----

② -----

----- 할 -----

1. ~ 5. (현행과 같음)

6.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체육

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

③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환불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③ ----- 제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공원내의 사용료는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해서는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 변상해야 -----.

② ----- 수거해야 -----.

③ -----

④ -----

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② (생략)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해서는 -----
-----.

제12조(운영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위탁받으려는 -----

----- 신청해야 -----.

⑤ -----
--- 위탁하는 데 -----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

----- 검토해야 -----

----- 구성·운영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8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업무”로,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
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단”을 “공단의 임원”으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를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노원구의회”를 “노원구의회(이하 “노원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임·직원의 겸직제한)”을 “(임직원의 겸직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무이외”를 “직무 이외”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임기동안”을 “임기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

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직원의 임용”을 “직원”으로, “의하여 행하여야”를 “따라 임용되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함에 있어”를 “대행할 때”로 한다.

제1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편성하여야”를 “편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인하여 예산”을 “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없는 한 지체없이”를 “없으면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을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때”를 “경우”로, “집행할 수 있다”를 “집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를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으로 한다.

제2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다음 각호”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6조 중 “분류하여야”를 “분류해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를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를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u>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 ----- ----- <u>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업무</u> ----- -----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 ----- ----- ----- ----- -----.</p> |
| <p>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기재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5. <u>임·직원</u>에 관한 사항</p> <p>6. ~ 13. (생략)</p> <p>② 공단의 정관을 <u>변경하고자 할 때에는</u>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 <p>제5조(정관) ① ----- ----- <u>기재해야</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임직원</u>-----</p> <p>6. ~ 13. (현행과 같음)</p> <p>② ----- <u>변경하려는 경우</u> ----- -----.</p> |
| <p>제7조(임원) ① <u>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u></p> <p>②·③ (생략)</p> | <p>제7조(임원) ① <u>공단의 임원</u>----- ----- <u>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생략)
-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생략)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노원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 노원구의회(이하 “노원구의회”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

구성해야 -----

-- 요청해야 ----.

④ -----

----- 공
개해야 -----.

않을 -----.

⑤ 그 밖에 -----
-- 대해서는 -----

-----.

⑥ (생략)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생략)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생략)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구의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1. (생략)
2.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3. 경영·컨설팅 전문가 또는 기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 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이사장) ① -----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우 -----
-----.

제9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
3. -----
그 밖의 -----
--

③ -----
----- 사람 -----
-----.
----- 예외로
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 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⑤ (생략)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② 감사는 공 단 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따른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 무 이 외 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생략)

④ -----

----- 사 람 -----

----- 예 외 로 하 다.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사) ① -----

----- 사 람 -----

----- 예 외 로 하 다.

② ----- 정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공 단 -----.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임 직 원 -----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

----- 직 무 이 외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사회) ①·② (생략)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생략)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생략)

② 공단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제13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임기 동안 -----.

④ -----

----- 대해서는 -----
-----.

⑤ (현행과 같음)

⑥ ----- 대해서는 -----

----- 예외로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직원 -----

----- 따라 임용되어야 -----

제16조(대행사업) ①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 사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따른다.

② -----
대행할 때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연도) -----

-- 따른다.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 편성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② -----
-----.

-- 예산-----
-----.

③ -----
----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 보고해야 -----.

④ (현행과 같음)

⑤ ----- 없으면 지체 없이 -----
-----.

제20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

----- 경우----- 집행해야 한다.

② -----

----- 따라 -----
-----.

제21조(결산) ① -----

-----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 공단의 예산·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통보한 공단의 예산·결산의 공통지침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2. (생략)

제24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5조(결손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

②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 -----

----- 범위-----
-----.

제23조(수입)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제24조(이익금의 처리) -----

-- 경우에는 다음 각 호-----
--- 처리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결손금의 처리) ① -----

--- 경우-----

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
으로 이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
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
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
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
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
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① (생 략)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 1. 2. (생 략)
- 3.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4. (생 략)

제30조(업무상황 등 공표) ① 이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
로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

② -----

----- 보고해야 -----.

제26조(물품관리) -----

----- 분류해야 -----

----- 수립해야 -----.

제28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는 -----
-----.

- 1. 2. (현행과 같음)
- 3. 임직원-----

- 4. (현행과 같음)

제30조(업무상황 등 공표) ① ---

----- 제출해야 ---
---. -----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

② -----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공
시해야 -----.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 <삭제>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
----- 않은 -----
----- 대해서는 지방공
기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8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보육업무 팀장이 된다”를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없는다”를 “없음”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년 이상 5년 이하”를 “5년 미만”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제1호”를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2호마목, 카목 및 타목 중 “50%”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삭제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보육업무 팀장이 된다.</u></p> |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 ----- ----- <u>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p> |
| <p>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u>없을</u>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p> | <p>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없을</u> ----- ----- ④ (현행과 같음)</p> |
| <p>제13조(위탁운영) ① · ② (생략)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u>아니한</u>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 <p>제13조(위탁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않은</u> ----- ----- -----</p> |
| <p>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 <p>제14조(위탁기간) ----- ----- -----</p> |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
에는 즉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
원을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
로 선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원장의 제청
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④ (생략)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규
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5년 미만-----

-----.

1. 2. (현행과 같음)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그 밖의

-----.

제16조(보육교직원) ① -----
----- 경
우-----

② -----
-----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의 취소) -----

-----.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택을 취소해야 한다.

제2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감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사용은 제외한다.

- 1. (생략)
-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 다. (생략)
 - 라. 삭제
 -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 바. ~ 차. (생략)
 - 카.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50%
 - 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50%

-----.

제29조(사용료의 감면) -----

--.

- 1. (현행과 같음)
-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마. -----
----- 50퍼센트
- 바. ~ 차. (현행과 같음)
- 카. -----
----- 50
퍼센트
- 타. -----

----- 50퍼센트

과. (생 략)

과.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8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
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
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교육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교육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교육”을 “사회환경교육”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를 “위하여”로, “지정”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p> <p>②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 <p>제3조(책무) ① ----- ----- ----- ----- 수립·시행해야 ----- ----- ----- ----- 협력해야 -----.</p> |
| <p>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기관의</p> | <p>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p> |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환경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환경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5. (생략)

③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① -----

----- “위원회” -----
-----.

② 위원회-----
-----.

1. ~ 5.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
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
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
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
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
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
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
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추진해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

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생략)

<신설>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 사회환경교육 -----

5.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

----- 위

----- 하

----- 서울

----- 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 운영---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3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신 설>

<신 설>

제9조 (생 략)

<신 설>

| | |
|-------------------------|---|
| <p><u>제10조</u> (생략)</p> | <p><u>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u>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4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p> |
|-------------------------|---|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 - 3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1 | 하계동 169-4, 169-9 | 공릉로58가길 12 | 2010. 6. 10. | 2026. 4. 16. | 건물번호 부여 신청 |
| 2 | 공릉동 412-28 | 공릉로 154 | 2010. 5. 20. | 2026. 4. 16.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2116-360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696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에 의거 월계1동의 공인을 등록하고 그 사항을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 1. 공 고 명 : 공인 등록 공고
- 2. 공고내용 : 노원구청장인월계1동민원사무전용1 외 2종의 공인 등록

| 구분 | 공인명 | 인영 | 서체 | 규격(cm) | 등록일 | 사유 |
|----|-----------------------|---|--------------|---------|---------------|------------------------|
| 등록 | 노원구청장인월계1동 민원사무전용1 |  | 훈민정음 해례본체 | 2.4*2.4 | 2026. 04. 09. | 신규 제작에 따른 등록 |
| 등록 | 노원구청장인월계1동 민원사무전용2 |  | 훈민정음 해례본체 | 2.4*2.4 | 2026. 04. 09. | 신규 제작에 따른 등록 |
| 등록 | 월계1동장의인 민원사무전용(중) |  | 훈민정음 해례본체 | 2.1*2.1 | 2026. 04. 09. | 신규 인증기 설치에 따른 등록 |

- 3. 공고기간: 2026. 4. 16. ~ 2026. 4. 30.
- 4. 공고방법: 구보 게재
- 5.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02-2116-3244)